2025-제1호

국내외 입법정책 동향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



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차 례

Ⅰ. 최근 타 시·도 입법 동향

1. 「충청남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1
2. 「부산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조례」 ····· 5

Ⅱ. 국회 및 중앙정부 입법 동향

1.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 8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22

Ⅲ. 최신 외국 입법 정보

1. 「독일의 의약품 연구개발 촉진」 입법례 ····· 29
2. 「독일의 디지털 기반 교육」 입법례 ····· 37

Ⅳ. 공공정책 정보 안내

◇ 「공공정책 정보」(메일링 서비스) ····· 45

Ⅴ. 자치법규 의견 제시 사례

1. 인·허가시 신청인의 동의 없이 주민에게 고지하는 내용 조례 제정 가능 여부 ····· 51
2. 다른 자치단체 소관 업무에 대한 건의안 등 조치결과 조례 제정 가능 여부 ····· 56

Ⅵ. 법령 해석 사례

1. 한국예탁결재원이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60
2. 지역자활센터에 사업수행 비용 지원 가능 여부 ····· 66

Ⅰ. 최근 타 시·도 입법 동향

Ⅰ. 타 시·도 입법 동향

1 【제정】 충청남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12. 30., 충청남도조례 제5776호, 2024. 12. 30., 제정】

□ 상임위원회 : 경제산업건설위원회

□ 제정이유

◇ **지속적인 인구감소, 청년인구 유출** 등 **지방소멸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최근 **자신만의 사업모델을 접목**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으로, **로컬크리에이터**를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지원계획의 수립에 대해 규정함(제4조).

나. 지원사업 및 예산지원에 대해 규정함(제5조).

다.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해 규정함(제6조～제7조).

□ 타 시·도 제정 현황

○ 총 2곳(충남, 경북)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의 자연환경, 문화적 자산을 소재로 창의성과 혁신을 통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음.

※ **로컬크리에이터** = **'로컬'**(지역) + **'크리에이터'**(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람)

○ 우리 도의 경우 지속적인 **인구감소 및 유출**로 지역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 지역만의 우수한 문화와 환경을 활용**한 전문적인 로컬크리에이터를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주민의 삶의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수원시 행궁동** 및 **부산 영도구** 등에서 로컬크리에이터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음.

충청남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12. 30., 충청남도조례 제5776호, 2024. 12. 30.,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로컬크리에이터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충청남도의 지역적 가치 발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로컬크리에이터”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자연적·문화적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로컬크리에이터에 대한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육성 및 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로컬크리에이터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2. 추진 전략
3. 투자소요액 및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대상자 발굴·육성 및 관련 기반시설 확충
2. 사업화 역량 강화
3. 상권 창출 연계 사업

4. 해외 진출 지원

5. 제품홍보 및 판로 개척 지원

6. 산업체·대학·연구기관·공공기관간 협력

7. 교육 및 인력 양성 사업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도 출자·출연기관에 해당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기관이나 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로컬크리에이터 자문위원회) 도지사는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로컬크리에이터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역경제 상생 활성화 방안 수립

2. 관련 사업에 대한 평가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 경제기획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2.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 주관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5776호, 2024.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제정] 부산광역시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2025. 1. 1., 부산광역시조례 제7497호, 2025. 1. 1., 제정】

*국제 바칼로레아(IB)는 1968년에 스위스 제네바를 기반으로 설립된 **교육기관임.**

□ 상임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정이유

◇ 부산광역시 소재 학교의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의 인재 양성 및 학교의 수업·평가 혁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감 책무에 대해 규정함(제3조).
나. IB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등에 대해 규정함(제4조).
다. IB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경비 지원에 대해 규정함(제6조).

□ 타 시·도 제정 현황

○ 총 1곳(부산)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국제 바칼로레아**(International Baccalaureate, IB) **프로그램이란**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교육재단인 IB 본부에서 개발·운영하는 국제 인증 학교 교육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 및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우리나라: 2017년 정부차원에서 공교육 도입 검토, 2019년 대구광역시와 제주도에서 도입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4년 10대 핵심과제로 IB프로그램 확산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24년 28개교(12억원) → '25년 31개교(24억원)**

○ IB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도내 학생들이 글로벌 환경에서 필요한 **비판적 사고 등을 통해 자기주도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부산광역시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nternational Baccalaureate)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1. 1., 부산광역시조례 제7497호, 2025. 1. 1.,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소재 학교의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인재 양성 및 학교의 수업·평가 혁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 바칼로레아(International Baccalaureate) 프로그램”이란** 국제 바칼로레아 기구(International Baccalaureate Organization, 이하 “IBO”라 한다)가 개발한 국제 인증 학교 프로그램으로,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개념 이해 및 탐구학습을 통한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추구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2. “IB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가. IB 관심·후보학교: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이하 “IB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도입·운영을 준비 중인 학교

나. IB 인증학교: IBO로부터 공식 인증을 받은 학교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IB 프로그램의 기반 조성과 체계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 교육감은 IB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교육청 **IB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IB 프로그램 운영·지원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IB 학교의 지정·운영·평가 방안
3. 그 밖에 IB 프로그램의 운영·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교육감은 IB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IB 학교의 운영 및 성과 확산 사업
2. IB 학교 교원의 전문성 신장 사업
3. 교육공동체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사업
4. 그 밖에 IB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지원) 교육감은 IB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평가) 교육감은 IB 프로그램 운영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에 평가 및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제8조(협력 체계 구축) 교육감은 IB 프로그램 운영과 지원에 관한 정보 공유와 교류를 위하여 국내외 유관 기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칙 <제7497호,20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Ⅱ. 국회 및 중앙정부 입법 동향

Ⅱ. 국회 및 중앙정부 입법동향

1 【일부개정】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12. 17., 국토교통부령 제1420호, 2024. 12. 17.,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기존 건축물의 **성능개선을 위한 증축 또는 대수선에 대해서는 보다 완화된 구조 안전의 확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 방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중축 및 대수선의 범위를 정하는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현 행	개 정('24. 12. 27. 신설, 시행일 2024. 12. 17.)
<신 설>	제58조의2(성능 개선을 위한 증축·대수선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서 제출의 특례) ① (생략) 1. ~2. (생략)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증축 또는 대수선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증축 또는 대수선 ② (생략)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위원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 해당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함.

○ 그러나, **방화・방수・단열 등의 성능개선**을 위해 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건축주에 대해서는 **구조 안전의 확인 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하고 있음.

※ 구조안전 확인 방법

개정전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안전 확인 서류 제출받아 허가권자에게 제출**

개정후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8조의2(성능 개선을 위한 증축・대수선에 따른 구조확인서 제출의 특례)

① 영 제3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건축주는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할 때 별지 제4호서식의 **구조안전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지붕 또는 외벽을 수선・변경 또는 증설하기 위한 증축**(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의 변경이 법 제26조에 따른 허용오차 범위 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수선
   가. **영 제3조의2제5호에 따른 대수선**(방화문 또는 방화셔터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로서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의 일부를 수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영 제3조의2제9호에 따른 대수선**(건축물의 외벽에 벽돌 또는 석재 등 건축구조 기준에 따른 무거운 마감재료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증축 또는 대수선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증축 또는 대수선**

○ 우리 도 관련 조례(전북특별자치도 건축 조례)에 확인결과 상위법령에서 개정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바, **완화된 구조 안전 확인 방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전북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시행 2024. 1. 18.,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399호, 2023. 12. 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지역”로 정하는 지역의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주전통문화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통한옥
2.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통사찰
3. 그 밖에 전통문화보존과 진흥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가 지정한 지역의 전통한옥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역의 건축물은 법 제2조제1항제11호·제44조·제46조에 따른 기준을 최소범위 이내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의2(건축허가 사전승인) 법 제11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사전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택법」 제15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제2장 건축위원회

제4조(설치)

① 법 제4조 및 영 제5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삭제 2015. 12. 28>

제5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등”이라 한다)한다. 다만,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은 시·군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등을 한다.

1. 법 또는 영에 따라 도지사가 발의하는 조례의 제정·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2.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질의민원(이하 "질의민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3.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은 시·군의 건축조례로 정한다.

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나. 「주택법」 제15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중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다만, 설계공모 또는 설계·시공을 일괄입찰한 경우를 제외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중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증축 또는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다중이용 건축물. 다만, 공동주택(동일 건축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되어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21층 미만이거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인 다중이용 건축물인 경우에는 시·군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등을 한다.

4.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건축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다중이용건축물을 심의할 때는 간략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면을 포함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심의에 필요하다고 할 경우 제출된 자료와는 별도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삭제 2011. 11. 11>

④ 시·군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중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시·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의 경우에는 특성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건축, 토목, 도시계획, 방재, 소방, 에너지, 디자인, 경관, 공간 환경, 사회, 조경, 조형예술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도시계획 및 건축 등의 관계 공무원(전북자치도의 건설교통 관련 국장 및 건축·소방 관련 부서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④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위원의 임명·위촉에 관한 사항은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를 따른다.

⑥ <삭제 2013. 8. 9>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는 영 제5조의2를 준용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와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때
3.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였을 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6. 영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도지사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등을 의결하며,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등의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의 대리참석을 인정하지 않는다.

⑤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거나 위원회 중에 퇴장 또는 좌석을 이석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회의 개최 전 위원에게 안건의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전검토를 요청받은 위원은 검토의견을 지정기일 내 제출해야 한다.

⑦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⑧ 위원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등이 신청된 경우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⑨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소위원회)

①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는 위원장이 위촉하는 소위원장을 두고, 소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소위원회에서는 제5조에 따른 심의 사항 중 소규모 또는 경미한 변경으로써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위원장이 소위원회에 부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⑤ 소위원회의 회의는 제9조를 준용한다.

⑥ 소위원회에서는 그 심의결과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제11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건축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3조(회의록)

①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에서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의 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위원장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록은 위원장의 서명날인 후 7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제14조(수당과 여비)

①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전북자치도 공무원으로서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은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② 제9조부터 제11조에 따라 관계전문가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거나 자료 등을 요구한 경우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참석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에 부친 안건의 용역·자문·연구와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했거나 관련하고 있는 사람과 담당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3장 전문위원회

제15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간사 및 그 외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하는 사람은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청렴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개정 2013. 8. 9>

제16조(전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
2. 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도지사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그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장, 주택건축과장 및 전북자치도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는 사람
4.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 중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 중인 사람
6.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그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제17조 <삭제 2021. 7. 9.>

제18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회의)

①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라 질의민원 신청이 있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19조(심의신청) 질의민원의 심의를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 질의민원 심의 신청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준용) 전문위원회의 구성·회의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각각 “전문위원회”로 본다.

제4장 공사감리자의 모집 및 지정 등

제21조(공사감리자의 모집 및 지정)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사감리자 등”이라 한다)를 모집하려는 경우 모집공고를 거쳐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할 시장·군수와 협의해야 한다.

1.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사감리자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하는 건축사
3. 「건축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
4. 「건축물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② 도지사는 공사감리자등의 등록명부를 전북자치도 및 시·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등록명부에 등재된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공사감리자 지정 연기 요청서를, 건축사사무소 개설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변경사항을, 「건축법」·「건축사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결과를 각각 7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시
2. 국내외 장기 출장 시

3. 등록명부에 등록된 건축사가 상주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중인 경우
4.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증빙서류 제출)

④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공사감리자 등록명부를 관리하는 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제3항에 따라 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변경사항을 제출받은 경우
3. 제3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⑤ 영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를 제외하고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공사감리자 등록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무작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리 업무량 등을 고려하고 균형있게 배정하기 위하여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건축사협회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이하 “협회”라 한다)와 협의할 수 있다.

1.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자
2.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공사감리자 지정을 거부한 자
3.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하거나 자격을 반납한 자
4. 공사감리자가 특별한 사유로 감리업무 진행이 어려워 지정 제외를 요청한 자
5. 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건축주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한 자

⑥ 허가권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제5항에 따라 지정된 공사감리자를 해당 건축주, 공사감리자 및 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지정내역을 공사감리자 지정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⑦ 공사감리자 지정을 통보받은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지정을 통보받은 후 14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해당 공사감리자 지정은 취소된다. 이 경우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다시 공사감리자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2조(공사감리자등의 지정 등) [

①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등록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무작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사감리자등의 등록·변경·취소, 모집공고, 명부작성 및 지정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업무의 위탁)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등록명부 관리업무와 지정대장 작성·관리 업무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장 지역건축안전센터

제24조(전북특별자치도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법 제87조의2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건축공사장의 안전사고 예방 등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건축물 등의 안전점검은 육안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안전점검이 완료된 때는 그 결과를 통보하고 관련정보는 전자적으로 관리한다.

1. 법 제8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
2.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 및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개발과 안전에 관련된 제도개선
3. 건축물의 안전관리계획, 안전점검계획 및 재난대비 안전대책의 수립과 점검 및 지원(다른 법령에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등을 받도록 규정한 건축물은 해당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한다)

4.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조사 연구와 분석 및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개발
5. 건축물 생애 전반의 안전 확보 및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6.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
7. 건축허가 사전승인에 필요한 건축물과 관련된 모든 계획 및 구조안전 등 검토
8. 도민의 건축물 안전문화 정착과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
9. 시·군 지역건축안전센터 기술 및 제도 지원
10. 그 밖에 도지사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

【일부개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6. 21., 법률 제20567호, 2024. 12. 20., 일부개정】

□ 개정이유

◇ 학교장이 **학교 밖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이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등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함.

□ 주요내용

현 행	개 정('24. 12. 20. 신설, **시행일 2025. 6. 21.**)
<신 설>	**제10조의4(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 관리 및 지원)** ①~② (생략) ③ 그 밖에 보조인력의 배치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위원회: 교육위원회

◆ 해당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안전 관리 지원 조례」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 시스템) **2023년도 학교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총 4,831건**이며, 그 중 **학교 밖**에서 발생한 건수는 **509건으로 약 10.5%에 달하고 있음.**

구분	2023년도	구분	2023년도
현장학습 중 사고	141건	그 밖의 교육활동 중 사고	167건
경기출전 중 사고	90건	등하교 중 사고	68건
체육활동 중 사고	40건	교통사고	2건
현장실습 중 사고	1건		
소계	**272건**	**소계**	**237건**
계		**509건**	

○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도 안전하게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상위 법령 시행('25. 6. 21.) 전(前) 조례를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안전 관리 지원 조례

【시행 2024. 1. 18.,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387호, 2023. 11. 1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각급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교육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나 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급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의 유치원 및 「평생교육법」제31조에 의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2. "현장체험학습"이란 수학여행, 수련활동, 숙박형 현장체험활동, 일일형 현장체험활동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 모든 교육활동을 말한다.
3. "현장답사"란 학교 밖 현장교육 실시경로, 시설의 안전, 위생, 유해환경 인접 여부,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지역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현장체험학습 책임자 및 인솔교사 등 교육활동 참여자가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는 행위를 말한다.
4. "학교구성원"이란 학생과 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 모두를 말한다.
5. "교육활동 참여자"란 학생 또는 교직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학교장의 승인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보조하거나 학생 또는 교직원과 함께 일체의 교육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안전교육"이란 각종 재난·재해 및 사고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는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고, 안전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기르는 교육을 말한다.
7.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활동 중 학교 구성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체계적인 학생안전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안전 관련 매뉴얼을 작성하여 각급학교에 보급한다.

③ 교육감은 학생안전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각급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학교구성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학교구성원은 모든 교육활동에서 자신과 타인의 안전에 주의하고,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학생안전 종합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안전권 보장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안전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생안전 관리의 기본방향과 추진 과제
2. 학생안전 관리를 위한 분야별, 사업별 추진계획
3. 학생 안전교육 및 홍보 계획
4. 학생안전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및 평가
5. 안전관련 외부기관과의 연계·협력 방안
6. 학생안전 관리·감독 방안
7.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안전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학생안전권 보장 특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학생안전 관리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안전권 보장 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심의·자문 한다.

1. 학생안전 관리 정책 방향 제시
2. 학생안전 종합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생안전 관리시스템 체계 구축을 위한 조사 및 연구 방안
4. 안전사고 예방과 대책을 위한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5. 안전교육 전문 강사풀 구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학생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장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0조의 안전관리 전문 기관 소속의 전문가
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4. 학교시설물 및 학생안전 관련 담당 공무원
5. 교원단체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학생안전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위원의 경우 해당 직위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제7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매년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회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현장체험학습)

① 교육감은 각급학교에서 교육과정과 연계한 소규모·테마형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할 것을 권장한다.

② 각급학교의 장(이하'학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현장체험학습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학생안전 사고에 대한 예방 및 대책
2. 학교구성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3. 그 밖에 학교장이 학생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학교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위하여 수학여행·수련활동 활성화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수학여행, 수련활동, 숙박형 현장체험활동의 실시과정 및 결과 등을 공개해야 한다.

④ 수학여행·수련활동 활성화 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현장체험학습운영과 관련하여 학교장의 의무이행 위반이나 기타 문제를 발견한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현장답사) 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 참가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장소 및 시설 등에 대하여 현장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교육)

① 학교장은 교육활동 전에 학생들에게 시설 및 교통수단 이용과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예상되는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체험·훈련·실습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제12조의2(학교안전사고의 대응과 조치)

①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속히 대응한다.

1. 사고 및 위급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안전 조치
2. 피해자의 보호자에 대한 사실 통보 및 지원
3. 중대 사고에 대한 교육감 보고

② 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업무 분장 및 대처 방안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의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학교계획에 포함한다.

제13조(안전교육 교과목 개설) 교육감은 안전사고 예방과 사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연수원의 각종 연수과정에 학교 및 학생안전 등에 관한 교과목을 편성한다.

제14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교육감은 학생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유관기관 및 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및 학교장은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시 안전 관련 기관에 교육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감과 학교장은 교육활동 정책의 수립이나 시행 과정에서 학부모회를 비롯한 학부모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 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Ⅲ. 최신 외국 입법 정보

Ⅲ. 최신 외국 입법 정보

1 독일의 의약품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입법례

【국회도서관, 2024-24호(통권 제262호), 안성경】

◇ **독일은 세계적인 의약연구의 선진국**인 동시에 **의약품 생산의 중심지**로서, **제약산업은 독일 경제의 핵심 산업**이다. 독일은 **코로나19 이후, 국내 의약품 부족과 세계적 제약사의 국외 이탈**이라는 문제에 직면하여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신약개발 촉진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 이에 독일 연방정부는 **2023년**에 **의약품 연구개발의 신속화·간소화**를 통해 **의약연구 국가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계획의 일종으로 전략백서(Strategiepapier)를 마련**하였다. 이는 일괄개정법인 「의약연구법(MFG)」의 제정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2024년 7월**에는 연방의회가 **「의약연구법(MFG)」을 제정**하여 의약연구와 관련된 **12개의 법령을 일괄 개정**하였다. 이 일괄개정법은 주로 「의약품법(AMG)」과 「의료기기법 시행법(MPDG)」 등의 개정, 규제 기관 및 연방의약윤리위원회의 재편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 의약품 연구 및 생산에 있어서 **세계적인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독일의 입법례**는 **우리나라 의약품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입법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관련 법령	「약사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
주제어	의약연구, 신약개발, 임상시험, 기밀약가협상, 의약품 병목현상

□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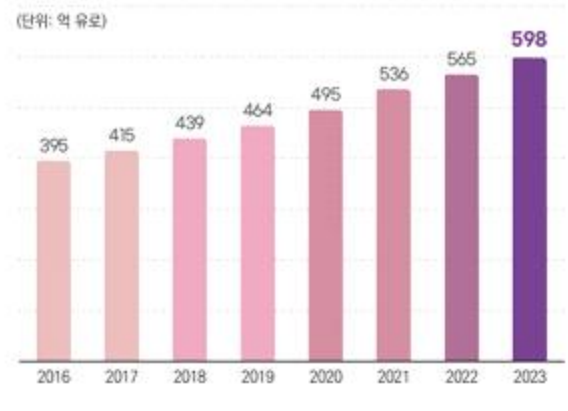
❍ **독일은 유럽에서 의약품 매출 1위**를 차지한다. 독일 제약시장 수익은 2016년 이후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3년 기준 598억 유로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의약연구 및 의약품 상용화에 있어서 독일의 강점을 부각하는 기회**가 되어, **약품 개발로 매우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그러나 **단기간에 개별 의약품을 제공할 수 없는 '의약품 병목현상'과 '글로벌 제약사의 국외 이탈'이라는 문제도 발생**하였다.

그림 1 EU 국가별 주요 제약시장의 매출액(2022)



※ 자료출처: statista[5]

그림 2 독일의 제약시장 수익 변화추이



※ 자료출처: statista[6]

❍ 이에 독일 연방정부는 **2023년에 제약산업 '전략백서(Strategiepapier)'를 채택**하고, **2024년 일괄개정법인 「의약연구법(Medizinforschungsgesetz: MFG)」을 제정**하여 **경쟁력 있는 제약산업 진흥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내 의약품 수급 불안 문제가 발생**하면서, **정부는 의약품 수급안정을 위해 특정 의약품을 대상으로 매점매석을 단속**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림 3 독일의 의약품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입법 과정



□ 제약산업 전략백서(Strategiepapier)의 주요 내용

❍ 2023년 독일은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전략백서를 채택**하였다. 이는 독일과 유럽에서 **강력하고 지속가능하며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제약산업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려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전략백서**에서는 아래와 같이 **7개의 주요 세부목적을 제시**하고 있다.

1. 인체용 의약품의 임상시험 간소화 및 신속화

❍ EU의 「규정(EU) 536/2014」가 독일 국내에 직접 적용되어, 임상시험의 승인 및 구현을 최적화하고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 연방의약품의료기기연구소(Bundesinstitut für Arzneimittel und Medizinprodukte: BfArM) 산하 연방의약윤리위원회 설치
- **국가연구 임상시험 신청 승인 소요기간 단축(19일 → 5일)**
- 임상시험을 위한 표준계약조항 개발

2. 허가관청 권한 강화 및 감독기관 간 시너지효과 창출

❍ 첨단치료기법 및 유전자 변형 약물과 같은 **특정 생물학적 약물의 경우**, 주(州) 당국의 제조 허가 부여 결정은 책임있는 상급 연방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이미 이루어지고 있으나, **유전자치료제, 세포치료제, 개별화 의약품 등 혁신의약품 분야에서 지속적 협력이 필요**하다.

- 제약산업의 중심 당국으로서 **"연방의약품의료기기연구소(BfArM)"가** 향후 **거의 모든 약물에 대한 임상시험 승인절차 및 선정에 대한 조정절차를 관리**

3. 보건의료서비스 디지털화 추진

❍ **신기술 개발과 임상시험은 건강데이터가 없이는 불가능**하며, 건강데이터의 가용성은 적합한 연구 후보를 식별하는 등 **제약연구의 성공에 매우 중요**하다.

- 제약사가 보건의료관청에 요청할 경우,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건강데이터 제공
- 주(州) 간 연구 프로젝트는 주(州) 데이터 보호 당국이 감독 및 승인

4. EU 내 생산시설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급 및 공급망의 다변화

❍ **국가의 산업 방향 및 구조적 변화**에 있어서 **제약산업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수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본조건을 위해 업계에 대한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기반을 둔 **정치적 지원이 필요**하다.

- 공급망의 다변화와 EU 역내 생산지 강화 방안 마련
-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 보조금, 공급 보장을 위한 보조금 지급 검토

5. EU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제기반 조건 마련

❍ EU에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 특히 **중요한 의약품의 경우 공급망의 투명성과 다각화, 활성성분 생산확대에 대한 유럽 차원의 협력을 촉구**하였다.

- 의약품 승인 규정은 유럽 전역에서 공통적으로 적용
- EU 의약품 패키지 및 국제전염병 협정(지적재산보호의 완화)에서 제약산업을 위한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기본조건을 전제

6. 혁신 연구프로젝트 지원

❍ 제약사 및 생명공학 회사가 독일에서 혁신적인 연구, 개발 및 생산에 투자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으로서 **우수한 전문가를 갖춘 연구 인프라와 관련된 연구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 희귀의약품(예: 항생제,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은 특히 초기 개발 단계에서 추가 지원

- 「성장기회법(Wachstumschancengesetz)」15)은 연구에 대한 세제지원(연구수당)을 확대하여 독일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제약사에 혜택 제공
- 연방정부프로그램인 '과학 스타트업(EXIST)'을 통해 지원

7. 의료보험 재정안전성(의약품공급) 확보

❍ 연방정부는 **환급의약품에 대한 제조사 할인율을 고정금액 없이 7% 수준으로 안정화할 계획**이다.

- 공동연방위원회(GBA)가 의약품 평가 및 가격협상
- 제약사는 의료보험협회(GKV-Spitzenverband)와 추가 가격협상 진행

□ 일괄개정법인 「의약연구법(MFG)」의 주요 내용

❍ **2024년 7월 4일** 독일 연방하원(Bundestag)은 위의 **전략백서를 바탕**으로 마련된 **일괄개정법인 「의약연구법(MFG)」을 제정**하였다. **동법의 주요 목적**은 독일을 의약연구 및 생산의 중심지로서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특히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개발, 승인 및 제조를 위한 기본조건을 신속화하고 간소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동법은 「의약품법(AMG)」, 「의료기기법 시행법(MPDG)」, 「방사선 방호법(StrlSchG)」 및 「의약품 및 활성 성분 제조에 관한 시행령(AMWHV)」 등 총 12개 법령에 대한 개정사항을 담고 있다. 이중 몇가지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밀약가협상제도 도입

❍ 기존에 **공개약가협상을 하던 방식**에서 **기밀약가협상제도를 도입**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제약사는 **신약의 약가협상 이후에 급여 약가에 대한 공개 여부를 5일 이내에 선택**할 수 있다.

기밀약가협상제도 선택이 가능한 제약사는 해당 신약 관련 임상이 독일에서 진행되었거나 연구개발부서가 독일에 있는 제약사인 경우에만 약가를 비공개할 수 있다(「의약품법(AMG)」 제42e조)

❍ 기밀약가협상제도에 따라 상업적 이익을 보장하는 만큼 **기존 신약의 리베이트 할인은 9%를 적용**키로 하였다. 기존의 신약에 대한 7% 공식 할인에 비해 2% 높게 설정된 것이다. **제약사에 상업적 이점을 제시하는 만큼 약제비 절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다.

❍ 기밀약가협상제도는 2028년 6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2026년까지 제도의 효과와 실행과정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일몰조항(Sunset Clause)을 두어 지속 운영여부를 결정한다.

2. 연방의약윤리위원회의 재편

❍ 2024년 연방의약품의료기기연구소(BfArM) 산하에 설립된 **연방의약윤리위원회**는 **최신 과학 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동위원회의 회원과 부회원으로 임명**한다. 학제간 연구가 가능하도록 변호사 1인, 의료분야 이외의 학문적·직업적 배경을 가진 자 1인, 의약실험 설계 및 통계 가능자 1인, 임상의학 경험이 있는 의사 3인(그중 1인은 임상약리학 또는 약리학 및 독성학 전문가 포함)으로 하여, 총 6인으로 구성한다(「의약품법(AMG)」 제41c조제1항).

❍ **연방보건부(BMG)는** 「규정(EU) 536/2014」에 규정된 절차의 처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연방의약품의료기기연구소(BfArM) 및 파울-에리히-연구소(Paul-Ehrlich-Institut))에 **연방의약윤리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의약품법(AMG)」 제41d조).

3. 의료시스템의 디지털화 촉진

❍ 첨단치료제 적응증(適應症) 등록 규정에 따라, 연방보건부는 첨단치료기법에 대한 **적응증 관련 보고서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여 디지털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의약품법(AMG)」 제4c조)

❍ 의료시스템의 디지털화가 촉진되면서, **제약산업은 건강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2026년 말에 새로운 협상을 통한 의료디지털화 관련 규정의 재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평가가 부정적일 경우 2028년 6월 말 디지털화를 종료한다는 일몰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4. 임상시험과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승인절차의 간소화

❍ **연구용 의약품과 보조 의약품의 라벨링이 더욱 쉬워져야 하며, 단일 임상시험의 승인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아울러 **임상시험 표준계약조항의 공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방사선 방호(防護) 분야에서 절차를 상호연계하고 **규제 기본조건을 개선**해야 한다(「의료기기법 시행법 (MPDG)」 제7a조).

❍ 의약품의 허가와 임상시험의 승인과 적용을 보다 쉽고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의약품 허가 당국 간 협력과 연방의약윤리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구속력 있는 표준계약조항의 근거가 마련될 것이다(「의료기기법 시행법(MPDG)」 제32a조). **독일에서 수행되는 임상시험 인·허가의 경우 통상 45일 정도 걸리던 것을 26일로 단축**하였다.

5. 위기 시 의약품 공급

❍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의 공급이 부족하거나 위협적인 전염병의 확산으로 통상적인 수준을 현저히 초과하는 특정 의약품의 즉각적인 공급이 필요한 경우, 관할 당국은 **개별적인 경우에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제한된 기간 동안 독일에서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의약품법(AMG)」 제79조제5항).

□ 시사점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백신의 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신속한 의약품 개발과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을 포함한 **여러 법령에 의약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다만 이러한 규정이 **개별적·산발적이고, 의약연구를 총괄하는 법령은 준비되어 있지 않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제22대 국회에서는 「첨단재생바이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여 첨단바이오의약품의 국내 생산기반을 확충하려는 논의**를 하고 있다.

❍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인류는 신약개발과 그 속도의 중요성을 실감**하였다. 이에 따라 백신 개발을 위한 속도전이 시작되었다. **독일은 의약연구와 의약품 개발에 대한 「의약연구법(MFG)」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기밀약가협상제와 여러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독일 내에 세계적 제약사를 유치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다.

❍ 지금까지 살펴본 독일의 일괄개정법인 「의약연구법(MFG)」은 제약산업 전략백서를 바탕으로 하여 **정부 주도로 신속하게 입법되어 관련 법령을 일괄 개정하고 일몰조항을 두어 시장의 반응**을 지켜볼 수 있도록 하였다.

❍ 우리나라도 **의약연구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의약품 병목현상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연구개발에 최적화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연구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입법과 정책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입법 및 행정절차를 간소화·신속화하고 의료시스템 디지털화 등 의약품 연구개발을 촉진한 것으로 평가받는 독일의 입법례가 참고가 될 것이다.

2 독일의 디지털 기반 교육 입법례

【국회도서관, 2024-25호, 통권 제263호, 박진애】

◇ **독일은** 디지털 교육 기반 지원과 관련하여 **'디지털 협약 학교'** (Digitalpakt Schule) **정책을 추진** 하고 있다. 디지털 교육전략과 디지털 교육 발전을 위한 방침을 마련하고, 연방정부와 주(州)정부 간 「디지털 협약 학교 행정협약」을 체결하였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협력하여 학교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디지털 교육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 **「디지털 협약 학교 행정협약」 1.0은** 2019년 체결되어 2024년까지 5년간 시행 중이다. 연방 정부는 각 주에 **50억 유로(약 7조 3천억 원)를 지원**하여 디지털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 현재 **「디지털 협약 학교 행정협약」 2.0이 후속 조치로서 예정**되어 있다.

◇ **「디지털 협약 학교 행정협약」 2.0의 방향성**에 관한 논의에서는, 독일에서 디지털 전환이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을 넘어 **교육 목표, 내용, 방법, 평가 등 교육시스템 전반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다는 점**과 아울러, 디지털 교육의 성공을 위해 **교사 연수와 디지털 교육콘텐츠 개발, 효과적인 디지털 교육모델 구축 등이 강조**되고 있다.

◇ 이러한 **독일의 입법례와 후속 논의**는 디지털 시대의 교육적 의미에 대한 폭넓은 담론 및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우리나라 교육 발전을 위한 환경 조성에 있어 중요한 참고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법령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주제어	디지털 협약 학교, 디지털 교육, 교사 연수, 개인 맞춤형 학습, AI 디지털교과서

□ 도입

❍ **우리나라 교육부는** 2023년 6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추진방안”에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2025년 수학, 영어, 정보, 국어(특수교육) 교과에 우선 도입하고, 2028년까지 국어, 사회, 역사, 과학, 기술·가정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디지털교과서의 도입이 기존 학교체제 전반의 변화를 요구하고, 이에 따른 **교육적 본질에 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등의 사유로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목소리도 있다.

❍ 이에 **교육부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합의하여 11월 29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이행안”을 조정하여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2025년에는 영어, 수학, 정보 교과에 도입하고, 국어와 기술·가정(실과) 교과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적용 교과에서 제외하고, 사회, 과학 교과는 2027년부터 적용한다는 것 등이다.

❍ **독일은** 디지털 교육 기반 지원과 관련하여 **‘디지털 협약 학교’(Digitalpakt Schule)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2016년 연방교육연구부(BMBF)의 ‘디지털 지식사회를 위한 교육전략’ 및 2017년 교육문화부장관회의(KMK)의 ‘디지털 세계에서의 교육전략’을 기반으로 한다.

❍ 독**일은 헌법인 「기본법」(GG) 제104a조**에 따라 **연방정부가 주정부와 행정협약을 체결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고, **행정협약은 재정지원 사용을 위한 각 주의 프로그램 설계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다.** 디지털 기반 교육과 관련하여, 2019년 5월 19일 「2019~2024년 디지털 협약 학교 행정협약」(이하 「디지털 협약 학교 행정협약」 1.0이 체결되었다.

❍ 독일의 디지털 교육전략 및 정책에서 도출된 원칙과 방침을 살펴보고, 이에 기반하여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지원하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디지털 협약 학교 행정협약」에 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 독일의 디지털 교육전략 및 디지털 교육 발전 정책

❍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연방교육연구부와 교육문화부장관회의에서 제시한 **디지털 교육전략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원칙을 도출**하였다.

- 디지털 교육을 위해 디지털 역량 강화, 디지털 인프라 구축, 관련 법적 틀 마련, 기관의 조직적 발전 지원, 국제화를 통한 교육의 혁신이 필요하다.
- 교육과정, 교사 교육, 교육시설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연방과 주 간의 협력을 통한 '디지털 협약 학교'를 통해 디지털 교육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 또한 '디지털 교육을 위한 핵심 방침'을 [표 1]과 같이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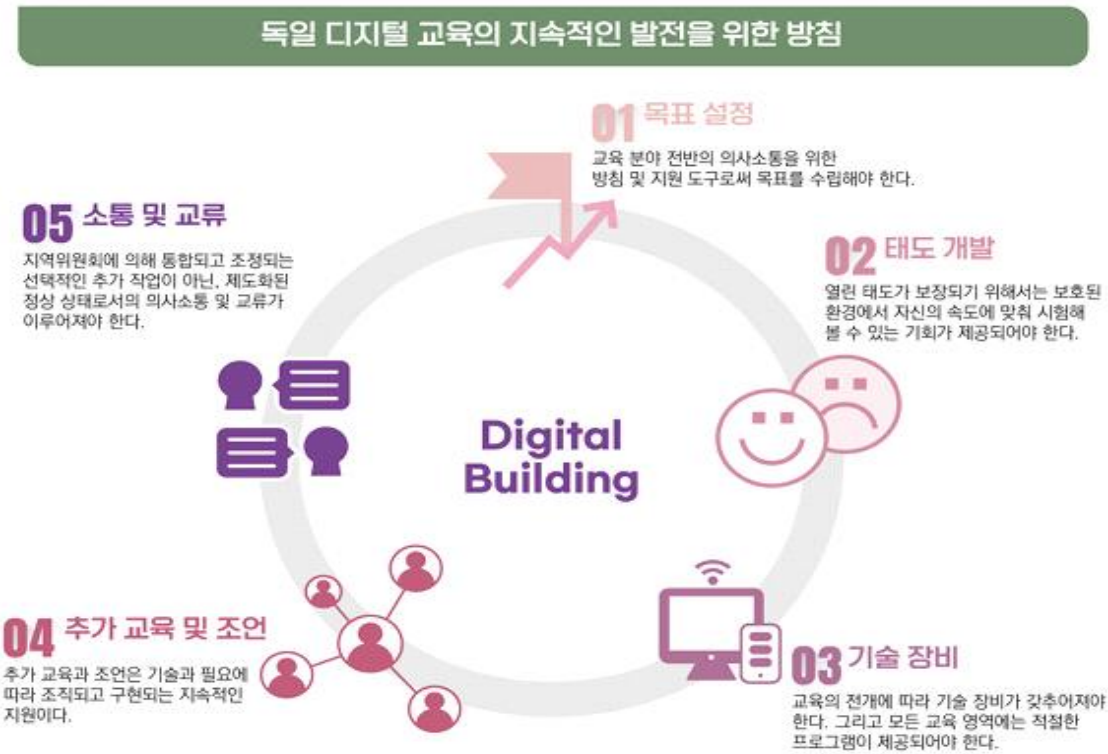
표 1 독일의 디지털 교육 핵심 방침

구분	내용
디지털 역량	학생들이 디지털 미디어를 오락뿐만 아니라 교육 및 자기계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적극적인 사회 참여의 기반이 되도록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함양한다.
교육에서 디지털 기술의 역할	디지털 기술은 성장, 번영, 삶의 질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동시에 데이터 추적, 사이버 범죄, 사이버 괴롭힘과 같은 위험도 수반한다. 따라서 **디지털 기술의 기회와 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디지털 미디어 사용 경험을 통해 가능하다.
교육시스템의 디지털 전환	디지털 기술의 교육적 활용을 위한 실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디지털 기술은 유연하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교육을 가능하게 하지만, 이러한 **기술의 사용은 교육목표에 부합해야** 한다.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협력	독일 전역의 디지털 교육을 위한 동등한 조건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디지털 협약」을 제안**한다. 이 협약을 통해 학교는 광대역 연결, WLAN, 안정적인 프레임워크 인프라를 갖추게 될 것이다. 연방정부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 및 확장에 투자하고, 주정부는 디지털 교육시스템 구현, 기술표준 개발, 교사 교육을 담당한다.
교사의 역할	디지털 미디어를 교육에 활용하는 데 있어 **유능하고 헌신적인 교사의 중요성**은 거듭 강조되어야 한다. 또한, 교사들이 디지털 역량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교사 교육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
디지털 교육자료	학생과 교사가 **고품질의 디지털 교육자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무료 및 오픈 라이선스 자료, 저작권법, 데이터 보호, 데이터 보안과 관련된 법적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
인프라	모든 교육기관은 고성능 광대역 네트워크, 특히 초당 최소 50Mbit의 전송 속도를 갖춘다. 또한 디지털 교육자료와 다양한 기술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 호환 가능한 시스템과 표준 인터페이스도 개발되어야 한다.

❍ 2021년 6월부터 교육 현장 및 당국의 **수많은 관계자로 구성된 '디지털 교육 네트워크'**는 디지털 교육에 관한 **부서 간 교류를 조직화**해 왔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디지털 혁신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논의를 해왔다. 이 네트워크는 2021년 6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교육 디지털화 포럼'에 의해 업무가 조율되었고, **연방교육연구부의 자금 지원**을 받았다.

❍ '디지털 교육 네트워크'는 현장의 구조적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독일 디지털 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침을 [그림 1]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그림 1 독일 디지털 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5가지 방침



출처: 디지털화교육포럼, "독일의 디지털 교육 발전을 위한 가이드라인"
(Leitlinien zur Weiterentwicklung der digitalen Bildung in Deutschland), 2022. 6.
https://www.netzwerk-bildung-digital.de/wp-content/uploads/2023/09/NBD_Ergebnisbericht_Leitlinienprozess.pdf

□ 「디지털 협약 학교 행정협약」 1.0

❍ 동 협약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독일 전역의 학교 디지털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행정협약**이다.

❍ **협약의 목표**는 디지털 시대에 모든 학생이 교육에 참여하고, 디지털 리터러시를 함양하며, 디지털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 협약 전문(前文)에 따르면, 디지털화는 독일 교육의 핵심 과제이며, 학생들을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독일 교육의 중요한 목표이다.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교육시스템이 모든 학생에게 동등한 참여 기회, 자율성, 그리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기존의 디지털 교육전략과 연계하여 지속적이고 일관된 디지털 교육정책을 추진토록 한다.

❍ **협약은** 미래 사회에 적합한 **디지털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각 주에 **50억 유로(약 7조 3천억 원)를 지원**하여 **학교의 인터넷 연결, 와이파이, 디지털 학습 플랫폼, 디지털 기기 구입 등을 지원**한다(제1조제1항).

❍ **지원 대상**에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모두 포함**된다. ▲학교의 디지털 인프라, ▲지역 및 주 차원의 디지털 교육 인프라, ▲2개 주 이상 참여하는 디지털 교육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제2조 및 제3조)

❍ **지원 방식은 각 주별 프로그램에 기반하여 지원**하고, 주별로 자세한 지원 내용에 관한 안내를 하도록 한다(제5조제2항). **지역 및 주 차원의 사업은 해당 주정부가 신청**하고, **2개 주 이상 참여하는 사업은 참여하는 주정부가 공동으로 신청**한다(제6조제3항).

❍ **재원 부담은 연방정부에서 최대 90%,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소 10%를 부담**하며, 주정부는 재정 취약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지원한다(제8조제4항).

❍ 지원을 위한 주요 조건 및 의무는 다음과 같다.

- **추가성:** 기존 디지털 교육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연방정부 지원금을 추가로 사용(제9조)
- **중복지원 금지:** 다른 연방정부 지원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제10조)
- **자금관리:** 주정부 예산 또는 특별자금으로 관리(제11조제1항)
- **경제성:** 사업계획 및 집행 시 경제성 고려(제11조제2항)
- **집행속도:** 사업 종료 30개월 전까지 지원금의 최소 50% 이상 집행(제11조제3항)
- **완료시기:** 투자 조치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완료(제11조제6항)
- **사업결과 보고 및 평가:** 주정부는 연방정부에 사업 추진 현황 및 자금 집행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제12조제2항)

□ 「디지털 협약 학교 행정협약」 1.0에 대한 평가 및 2.0을 위한 논의

❍ **연방정부는** 「디지털 협약 학교 행정협약」 1.0의 후속 프로그램인 **「디지털 협약 학교 행정협약」 2.0을 2030년까지 시행할 계획**임을 2023년 12월 7일 연방의회 대정부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밝힌 바 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2024년 12월 현재 계속 협의 중**인데 서로 의견 차이를 보인다.

❍ **주정부는 연방정부가 학교 디지털화 재정지원을 지속하지 않으려 한다고 비판**하면서, 2030년까지 진행될 **「디지털 협약 학교 행정협약」 2.0에 더 많은 자금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연방정부는 주정부와의 새로운 프로그램에서 최대 50%까지만 지원**하기로 한 2023년 내각 결정을 근거로, **「디지털 협약 학교 행정협약」 2.0에 최대 25억 유로(약 3조 6천억 원)까지 지원할 의향이 있지만 주정부도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 이러한 논쟁은 학교교육이 본질적으로 주정부의 책임이라는 점과 최근 연방정부 재정이 부족하다는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연방정부는 「디지털 협약 학교 행정협약」 1.0에서 전체 비용의 90%를 부담했지만, 2.0에서는 재정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의견을 표명했다.

❍ **연방정부는** 단순히 기술 투자에 그치지 않고 **교사 연수와 디지털 교육콘텐츠 개발, 효과적인 디지털 교육모델 구축 등을 위한 포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반면, **주정부는 각 주의 특성에 맞는 디지털 교육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유연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디지털 협약 학교 행정협약」 2.0의 방향성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예산 배분 문제를 넘어, 독일 교육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책임과 역할 분담, 그리고 미래 교육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 2024년 3월 28일과 6월 7일 연방의회는 대정부 서면질의에서 「디지털 협약 학교 행정협약」 1.0의 후속 조치에 관하여 다시 질의했다. 이에 연방정부는 「디지털 협약 학교 행정협약」 1.0의 자금을 2025년 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현재 진행 중인 연방과 주정부 간 합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디지털 협약 학교 행정협약」 2.0을 체결하여 2025년 초에 발효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 요약 및 결론

❍ **독일 정부는 「디지털 협약 학교 행정협약」 1.0에 따라** 2019~2024년 학교 디지털화를 위해 총 71억 5천만 유로(연방정부 65억 유로, 주정부 및 지자체 6억 5천만 유로, **한화로는 총 104조 8천억 원**)를 **투자**하였다. 그러나 **많은 학교가 여전히 디지털 장비와 교육자료가 부족하고, 교사들은 디지털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는 「디지털 협약 학교 행정협약」 2.0을 계획 중이며, 이를 통해 추가 자금을 지원하여 디지털 교육을 확대하려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 독일은 헌법인 「기본법」에 따라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행정협약을 체결하여 **‘디지털 협약 학교’(Digitalpakt Schule)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한시적인 특별교부금의 형태가 아니라** 디지털 교육 전략 및 정책에서 도출된 방침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에서 **연방예산법에 따른 연방예산의 지원을 명시하는 방식**을 취한다.

❍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디지털 시대에 학교가 교육적 사명을 완수하고 학생들의 삶을 잘 준비시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디지털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면서 ▲명확한 비전과 목표 설정, ▲열린 자세와 변화 수용, ▲교사 및 교직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의 필요성,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을 통한 디지털 기술의 잠재적 위험 요소 극복, ▲지속적이고 충분한 소통 및 협력, ▲교육과정 전반에 걸친 통합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 또한 **디지털 시대의 교육 및 학습은** 지능정보화기술의 보급 확대에 치중하기보다는 **‘교육’의 진보에 우선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원칙이 거듭 강조**된다. **교육시스템의 디지털 전환은**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을 넘어 **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 평가 등 교육시스템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과제**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명확한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을 통해 교사와 학생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독일의 디지털 교육전략과 정책 및 헌법인 「기본법」에 따른 「디지털 협약 학교 행정협약」의 내용과 후속 논의**는 디지털 시대의 교육적 의미에 대한 폭넓은 담론 및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우리나라 교육 발전을 위한 환경 조성에 중요한 참고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Ⅳ. 공공정책 정보 등 안내

Ⅳ. 공공정책 정보 등 안내

◇ 공공정책 정보

※ 공공정책 정보는 이 달의 주요 정책정보 목록만 기재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께 메일로(메일링서비스) 보내드렸음을 안내드립니다.

주 간	상 임 위	주 요 정 책 정 보
1월 둘째주	국방	○ 중국의 핵전력 증강 동향과 핵전략 변화 가능성 검토 ○ 북한의 대남노선 전환과 대남공작 전망
	교육	○커리어 전환 시기의 40대, 50대 중장년의 교육요구는 무엇인가? ○ 늘봄지원센터 역할과 기능 강화 방안 연구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 AI 기술의 마케팅 활용 사례와 공공부문 적용 방향 ○ 국내 R&D 분야 외국인 고급 인력의 첨단분야 참여 실태와 정주 여건 분석 ○ 글로벌 AI 가치 사슬 분석을 통한 AI 경쟁력 강화 제언 ○ AI 안전의 개념과 범위 ○ 국내 가상융합산업의 통계 현황 및 개선 방안 ○ AI 에이전트를 지원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첨부파일 있음
	외교통일	○ 트럼프 2.0시대 미·중 펜타닐 갈등과 시사점 ○ 소다자 협력의 시대는 저무는가? ○ 북한의 국가 유통 강화 정책과 시장지표의 변동 ○트럼프-시진핑 2기, 일본 이시바 내각의 과제와 일·중 관계 전망 ○ 남중국해 분쟁을 둘러싼 필리핀의 對中정책과 시사점 ○ 북한의 제8기 제11차 당 전원회의 분석과 함의 ○ KDI 북한경제리뷰 (2024.12)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	○ (유럽) EU 경쟁력의 미래-유럽을 위한 경쟁력 전략 ○ (중국) 디지털 경제 핵심 산업 특허통계 분석 보고서 2024 ○ 미국 핵심 광물 전략과 공급망 분석 ○ (2025년) 반도체산업 수출 전망 ○ (2025년) 수출전망 및 지역별 시장여건 ○ 네덜란드 10대 선도산업 분석 및 시사점 ○ 트럼프 보편관세의 효과 분석 ○ (2024년 하반기) 태양광산업 동향

주 간	상 임 위	주 요 정 책 정 보
1월 둘째주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2025년) 10대 농정 이슈
	문화체육관광	○플랫폼 시대의 디지털 콘텐츠 소멸과 문제점
	환경노동, 문화체육관광	○콘텐츠산업의 미래 : AI 기술이 변화시키는 고용 현황
	환경노동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정책 필요하다! ○KT 민영화 이후 특징과 구조조정의 문제점 ○제주도민의 기후변화 불안 경험과 환경 행동 추이 (2012~2022) ○제주 청년의 희망 일자리 성별 현황 분석과 정책과제
	여성가족	○인구감소 시대, 창업국가 건설을 위한 여성 창업 활성화에 대한 제언 ○영유아의 시간제 사교육 이용 변화 추이와 특징 ○제주특별자치도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역할 및 향후 과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이탈리아 항공우주 산업동향 및 한국기업 진출방안
	기획재정	○美 트럼프 신행정부의 세제 개혁 전망 및 시사점 ○한국의 대 중앙아시아 개발협력 현황 및 시사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행정안전	○디지털 분야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국내·외 비자 제도
	국토교통	○뉴스테이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경험과 시사점 ○경기도 대중교통 부족지역 수요응답형교통(DRT) 서비스 통합 추진 방안 연구
	법제사법, 행정안전	○모바일 신분증 도입 현황과 관련 법적 쟁점
	환경노동, 행정안전	○강우사상 변화 반영 서울시 산사태 위험도 영향분석과 관리방안
	보건복지	○성별에 따른 제주지역 노인 소득보장의 현황과 대안

주 간	상 임 위	주 요 정 책 정 보
1월 셋째주	행정안전	○국내 투자이민제도의 현황과 과제 ○생활임금의 '지역'과 '운동' 전략 ○공무원 인력운영 선순환 구조 마련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 방안 연구
	행정안전,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제주지역 유망 중소제조업 발전 전략 연구
	외교통일	○2024년 북한 대외정책 평가 및 2025년 전망 ○(2024년) 브라질 G20 정상회의의 결과와 함의 ○(2025년) 한일관계 3대 리스크 관리 ○시진핑 주석의 2025년 신년사 분석과 함의 ○(2025년) 북한과 세계 : 미중관계, 러우전쟁, 그리고 트럼프 ○트럼프 2기 정권과 일본의 대우크라이나 지원 ○미국 트럼프 2기 대(對)중남미 불법 이민자 (반)이민 정책 전망과 시사점 ○COI 보고서 이후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 성과와 과제 ○트럼프주의 외교 전략과 세계질서의 미래, 한미관계 ○인도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 : 개발협력을 중심으로 ○서로 다른 '리뉴얼(renewal)' 구상의 각축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와 미 신정부의 대외정책 전망
	국토교통, 행정안전	○여건 변화에 따른 경기도 도시정비사업의 관리 및 지원 방안
	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	○소프트웨어 개발자 채용시장의 변화와 생성형 AI의 영향 ○국내 홈쇼핑사업자의 탈TV 전략과 시사점 ○유럽의 디지털 10년 현황 및 주요국의 디지털 10년 전략 로드맵
	보건복지	○트럼프 2.0 정부의 정책 동향과 국내 보건산업 영향 및 전망 ○인권의 눈으로 바라본 노인 ○아동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세종시 공공형 놀이터 활성화 방안 ○충청남도 중장년 1인가구 사회적 고립 실태 및 지원방안 ○일본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함의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 산업 2024년 동향과 2025년 전망 ○콘텐츠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ESG 적용 방안 연구 ○인구감소시대, 지역관광의 역할과 정책 대응 방향

주 간	상 임 위	주 요 정 책 정 보
1월 셋째주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에콰도르의 농업 및 화훼산업 동향
	법제사법	○국제사회에서 '법률전(lawfare)'의 전개와 우리의 대응
	환경노동	○지역 산업구조를 고려한 시나리오별 탄소세 파급영향 분석 ○스킬 이코노미 : 변화하는 기술 시대의 생존 전략 ○지역과 상생하는 노인일자리사업 사례 ○노인일자리사업의 안전사고 현황과 특성 ○노인일자리 참여자 디지털 직무역량 수준 및 교육 현황 ○디지털 전환 정도에 따른 고령자 고용 변화
	여성가족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에 대한 인식조사 연구 ○서울시 가사서비스 지원 정책 발전 방안 연구
	기획재정	○2025년(乙巳年) 경제, 을씨년스럽다
	환경노동, 행정안전	○TOC 기준 오염총량관리제 도입에 따른 경기도 대응 방안
	교육위원	○인간교사와 AI 보조교사 간 협력 모형에 기반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선 방향 탐색 ○AI 디지털교과서에 관한 학부모의 인식 분석과 과제 ○인구감소지역 초·중등교육 규제 개선 방향 탐색
	국토교통	○세종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요금체계 개편 방향 연구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로 인한 주택연금 수요 변화 분석
	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 행정안전	○지방소멸시대, 디지털 SOC의 역할과 과제 ○AI 분석 기술을 활용한 사회안전망 서비스 구축
	법제사법, 국토교통	○미래 녹색건축물 인증규제 변화 전망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	○트럼프 2기 미국의 대북 수출통제·경제제재 현황과 전망
	법제사법, 보건복지	○첨단재생의료 관련 해외 법제 동향 및 국내에의 시사점

주 간	상 임 위	주 요 정 책 정 보
1월 넷째주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 소프트웨어중심자동차(SDV) 시대를 여는 길 ○ KISTEP Think 2025, 10대 과학기술혁신정책 아젠다 ○ (2025) 인공지능 기술 경쟁과 세계정치 ○ SPRi 디지털 미래기술 전망 2025 ○ 민·군 레이다 응용기술 ○ AI 규범경쟁의 서막 ○ 글로벌 주요기관 전망 2025년 유망기술 트렌드 및 시사점 ○ 경기도 AI 산업생태계 현황과 정책제언 ○ 영국 지역 공유 면허 프레임워크 개선 동향
	법제사법, 국토교통	○ 보행자길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 연구
	외교통일	○ 북한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인권 침해 가능성 및 우리의 대응 방안 ○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쇠퇴 속 한국 민주주의 외교의 과제 ○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 주요 내용과 2025년 경제정책 전망 ○ 미국 국방부 '중국 군사력 보고서(2024)'의 주요 내용과 함의 ○ 트럼프 2.0 시대 트럼프 리스크와 한국 ○ 해외 독재정권의 붕괴사례와 북한에 대한 시사점 ○ (2025년) 인도-태평양 전망과 한국의 과제 ○ 2025년 트럼프 정부와 인도-태평양 전략 ○ 트럼프 2.0 시대 동남아의 대응 방향과 시사점 ○ 한국의 대러 제재와 러시아정부의 제재 대응 동향분석
	국방	○ 2025 세계안보 현실 대 인식 :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과 공격숭배 현상 ○ 한국은 오커스 필러 2(AUKUS Pillar 2)에 가입해야 하는가?
	문화체육관광	○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 현황과 정책과제 ○ 영국의 지역 미디어 환경에 대한 Ofcom의 검토
	환경노동	○ R&D분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 현황 및 시사점 ○ 노인일자리 안전관리 연구 ○ 디지털전환에 따른 노인일자리 활성화 방안 연구 ○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고용지원 정책방향 ○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소고
	행정안전	○ 기후변화 대비 동절기 재난관리 전략 ○ 재난안전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본 연구 ○ 한일 양국의 고향사랑기부제 비교연구

주 간	상 임 위	주 요 정 책 정 보
1월 넷째주	국토교통, 행정안전	○ 일본 입지적정화 제도의 동향과 인천시 시사점
	행정안전,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 대전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다변화 전략
	여성가족	○사회통합의 새로운 지평, 이주배경아동 돌봄에서 시작된다 ○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의무 구체적인 가이드 필요
	교육	○ (2023년) 초·중등학교 디지털 전환 실태조사 및 분석 ○ 인구감소 지역 소규모 공립병설유치원 운영 개선 방안
	보건복지	○ 장애인 관련 사회적돌봄 서비스 제도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향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의약품 공급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연구 ○ 지역소멸위기 대응 노인돌봄체계 개편 방안 ○ 지속가능한 사회복지재정을 위한 상병수당 설계
	기획재정	○ 조세 및 재정정책이 여성의 출산 후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분석 ○ 자살 예방을 위한 재정정책의 과제 ○ 베트남 경제의 명과 암 ○ 정부지출 재원배분의 정치경제학적 접근에 관한 연구 ○ 정부연구개발 이전지출의 민간 지식자산 형성효과 ○ 파레토 효율성 측면에서의 조세-이전 체계 평가
	국토교통	○ 건설산업 재탄생(Rebirth)을 위한 ESG경영의 가치 탐색 ○ 인구-주택-도시 변화를 고려한 주택시장 구조변화 장기 전망 연구
	법제사법, 환경노동	○ 영국의 2008년 기후변화법의 주요 내용 및 검토
	법제사법, 외교통일	○ 대북전단 관련 법제 검토
	환경노동, 행정안전	○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력수급 체계화 방안 연구

Ⅴ.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Ⅴ.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1 의원발의로 주유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인·허가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인의 동의 없이 대상 지역 주민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청주시, 의견24-0456, 2024. 12. 24.)

□ **질의요지**

가.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주유소·축사·공장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인·허가 등 신청이 있는 경우** 청주시장이 **신청인의 동의 없이** 해당 인·허가 등의 **신청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시설에 관한 내용 등을 대상 지역 주민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나. **신청인에게 동의를 구한 후 주민에게 고지**하도록 한다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누설'에 해당**하는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인·허가 처리 등의 업무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행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보이는 바, 자치법규 입안 시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민원인이 인·허가 등을 신청한 시설에 관한 정보 등 **민원 내용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라면 민원처리법 제7조에 따른 '누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이유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를 의미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개정하기 위해서는 조례로 정하려는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할 것이고,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둘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는 법령 등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신청하는 등의 민원을 법정민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가목에서는 민원처리법에서의 "행정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청주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및 주민 요청 간담회에 관한 조례안'(이하 "청주시조례안"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는 "사전고지"란 주민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시에서 접수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인근 주민에게 미리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고 하고 있고, 안 제5조 및 별표에서는 사전고지 대상시설로 주유소·축사 등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서는 대상 시설의 용도(제1호) 및 대지 위치(제2호) 등을

사전고지 내용으로 하고 있고, **안 제8조제1항에서는 시장은 사전고지 대상 시설에 대한 인·허가 신청 등의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시청 홈페이지(제1호) 등에 사전고지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살피건대, **민원처리법 제7조에서는**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외에도 **"민원의 내용" 자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의무를 행정기관의 장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이 문언상 명백해 보이고**, 해당 규정은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 내용에 포함된 특정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민원인 등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 등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주유소·축사·공장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인·허가 등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인의 동의 없이 해당 시설에 관한 내용 등을 대상 지역 주민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민원처리법 제7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청주시조례안에 따른 사전고지 절차는 지역사회에서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인·허가 등의 접수 단계에서 주민에게 해당 시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제도로서, 인·허가 등 처분을 하기 전에 의견제출 및 간담회(안 제9조 및 제10조)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보이는데, **안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안 별표에 따른 사전고지 대상시설에 대한 인·허가 신청 등이 접수되는 경우 재량의 여지 없이 청주시장은 대상지역 주민에게 사전 고지를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는바,** 사전고지 대상시설의 설치에 관한 **인·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서 해당 신청 내용 등**을

사전고지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하여 조례에서 인·허가 등의 처분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사전고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인·허가 처리 등의 업무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행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보이는바, 자치법규 입안 시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살피건대, **민원처리법 제7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질의 가에서 살펴본 것처럼 민원처리법 제7조의 입법취지는 민원 내용과 민원인 및 특정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민원인 등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규정에서의 **"누설"이란 민원 내용 등을 아직 알지 못하는 제3자에게 '임의'로 알려주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민원인이 인·허가 등을 신청한 시설에 관한 정보 등 **민원 내용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라면 민원처리법 제7조에 따른 "누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질의 가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전고지 대상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인·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서 해당 신청 내용 등을 사전고지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민원인이 민원 내용의 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조례에서 **인·허가 등의 처분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전고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인·허가 처리 등의 업무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보이는바, 자치법규 입안 시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범위) ① 민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민원 처리의 원칙) ①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처리기간이 남아 있다거나 그 민원과 관련 없는 공과금 등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의 규정 또는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 처리의 절차 등을 강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국회·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의원의 건의안 또는 결의안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강원특별자치도, 의견24-0411, 2024. 11. 28.]

□ 질의요지

가. 국회·정부·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의원의 건의안 또는 지방의회의 결의안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나. (질의 가에서 가능하다면) 도의회의 건의안·결의안에 대해 도지사와 교육감으로 하여금 그 처리 현황을 파악하여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도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처리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기관위임사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외부에 건의안 등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건의안 등의 내용이 실현되도록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까지 건의안 등의 처리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를 의미하고,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하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한정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기관위임사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 조례안'**(이하 "강원특별자치도조례안"이라 한다) **제2조**에서는 **"건의안"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 국회·정부·다른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하고(제1호), **"결의안"이란** 의원이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고(제2호) 규정하고, **안 제5조제1항**에서는 **도지사와 교육감은 건의안 및 결의안의 처리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건의안 및 결의안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살피건대, **강원특별자치도조례안 제2조에 따른 건의안 및 결의안**(이하 "건의안등"이라 한다)의 발의와 같은 지방의회의 의견 표명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서 직접적으로 명시하는 권한은 아니지만**,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이행하고, 주민의 의견을 지방의회가 대변하여 표명한다는 취지에서 인정되는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바, 건의안등의 내용에 **다른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의견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그 내용에 강제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건의안등의 발의가 다른 기관의 권한에 대한 침해에 해당한다거나 해당 건의안등의 발의와 처리 현황 파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가 **국가사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회·정부·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의원의 건의안 또는 지방의회의 결의안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먼저, **강원특별자치도조례안 제2조**의 정의규정에 따르면, **"건의안"은 의원이 다른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하기 위하여 마련**되고, **"결의안"은 의회의 결집된 의사를 외부에 '표명'하기 위하여 마련되는 의안** 형태인바, 이러한 건의안등의 생성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지방의회는 사전에 집행기관에 통지를 하거나 협의를 거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의사 표명 권한을 행사하여 건의안등을 발의·의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한편, 외부에 건의안등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건의안등의 내용이 실현되도록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까지 건의안등의 처리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조례안 제3조**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건의안등이 관련 기관에 전달되고 정책**

등에 반영되게 노력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고, **안 제4조**에서는 건의안등의 처리에 대하여 **의장이 건의안등을 관련 기관에 '문서로 전달' 하도록 조치**하고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그 내용을 알리도록 규정**하려 하는바, **이러한 규정을 통해 의회 의사의 외부 표명·전달이라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도 이 사안을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건의안등의 처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므로, 자치법규 입안 시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Ⅵ. 법령 해석 사례

Ⅵ. 법령 해석 사례

1 한국예탁결제원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 관련) 【법제처 24-0978, 2024. 12. 31., 행정안전부】

□ 질의요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정보공개법 시행령"이라 함)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 회답

자본시장법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합니다.**

□ 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2조제3호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는 같은 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문언상 당해 법인의 설립 및 규율을 목적으로 특별히 제정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법인의 설립 및 규율 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제정된 법률 가운데 특정 법인의 설립근거를 둔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도 포함**된다고 볼 것인데, 한국예탁결제원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을 염두에 두고, **해당 법인에게 부여된 업무가 국가행정업무**이거나,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업무 수행으로써 추구하는 이익**이 해당 법인 내부의 이익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해당하는 공익적 성격을 갖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되, **해당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이 법인의 조직 구성과 활동에 대한 행정적 관리·감독 등에서 **「민법」이나 「상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일반 법인과 달리 규율한 취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법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보조의 유무와 그 정도**, 해당 법인의 공공적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는 별도로 **해당 법인에 대하여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먼저 **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제1조)로, **같은 법 제294조**에서는 **증권등의 집중예탁과 계좌 간 대체,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업무 및 유통의 원활을 위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을 설립**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은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설립근거를 자본시장법에 두고 있는바, 한국예탁결제원은 특별법인 자본시장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한국예탁결제원이 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에 대해 살펴보면**, ① 자본시장법 제296조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등의 집중예탁업무(제1항제1호), 증권등의 계좌 간 대체업무(제1항제2호) 등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를 행한다고 규정하여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하여금 금융시장에 필요한 예탁·결제 인프라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② 같은 법 제298조제1항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아닌 자는 증권등을 예탁받아 그 증권등의 수수를 갈음하여 계좌 간의 대체로 결제하는 업무를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증권등의 예탁·결제 업무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③ 같은 법 제61조제1항 본문에서는 **금융투자업자는** 그 고유재산을 운용함에 따라 소유하게 되는 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지체 없이 예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5조제1항 본문에서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따라 보관하게 되는 투자자 소유의 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지체 없이 예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같은 법에서는 예탁 업무의 통일성 및 투자자 재산 보호 등을 위해 **금융투자업자가 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적으로 예탁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한국예탁결제원의 업무는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 하는 역할을 하는 등 공익적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 해당 법인의 업무 수행으로써 추구하는 이익이 해당 법인 내부의 이익에 그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자본시장법상의 **행정적 관리·감독 체계**에 대해 살펴보면, ① 한국예탁결제원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고(같은 법 제299조제2항), ② 같은 법 제302조의 예탁업무규정 및 같은 법 제303조의 **결제업무규정 등을 제정·변경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같은 법 제305조제1항), **그 외의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305조제3항), ③ **금융위원회**는 한국예탁결제원 및 그 임직원이 '같은 법 제296조제1항 각 호, 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 외의 업무를 영위한 경우' 등 처분 사유(같은 법 별표 8 제1호부터 제29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정지,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임원 해임요구, 직원 면직요구** 등을 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307조), ④ **한국예탁결제원의 사장은 주주총회에서 선출**하되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자본시장법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일반적인 법인과 달리 행정적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① **한국예탁결제원은 1974년에 「상법」상 주식회사의 형태로 출범**한 후 **1994년 1월 5일 법률 제4701호로 「증권거래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예탁기관의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유가증권의 집중예탁을 활성화하고 유가증권의 실물거래에 따른 비용과 사고위험을 축소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특수법인의 형태로 개편된 것인 점**, ② 한국예탁결제원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함)이 2019년 9월 시행되어 전자증권제도가 한국예탁결제원의 독점 사업의 형태가 아닌 전자등록업 허가제의 형태로 도입됨에 따라 **2022년 1월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되었으나,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에도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자본시장법에 따른 독점 사업인 기존 예탁제도를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고 한국예탁결제원 외에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업 허가를 받은 기관이 없다면 **한국예탁결제원의 경우 여전히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에 준하는 정도로 공공성**이 있다고 할 것인 점, ③ **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과 별개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등을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한국예탁결제원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알권리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 해당 법인에 직접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공공성을 갖는 법인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정보공개법령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것

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시장법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해당하는 법인의 구체적인 범위 또는 요건 등을 정보공개법령에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 략)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2. 삭제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5.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6. 제5호 외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다만, 정보공개 대상 정보는 해당 연도에 보조를 받은 사업으로 한정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설립) ① 증권등(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집중예탁과 계좌 간 대체,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업무 및 유통의 원활을 위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을 설립한다.

② 예탁결제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예탁결제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지역자활센터의 설립·운영 비용”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 비용”을 모두 지원할 수 있는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2항 등 관련) 【인천 연수구 24-0828, 2024. 12. 30.】

□ 질의요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기초생활보장법”이라 함) 제16조제1항에서는 **보장기관**(각주: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하며(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4호 참조), 이하 같음)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같은 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보장기관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지역자활센터의 설립·운영 비용 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규정**하고 있는바, 보장기관은 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지역자활센터의 설립·운영 비용”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모두 지원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하나만 지원할 수 있는지?

□ 회답

보장기관은 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지역자활센터의 설립·운영 비용”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모두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이유**

먼저 **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제2항**에서는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지역자활센터의 설립·운영 비용”** 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6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지원 사항이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또는”은 어느 것을 선택해도 될 때를 의미** (각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2023) p. 150)하므로, **보장기관은 두 가지 지원 사항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하거나 두 가지 모두를 지원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두 가지 지원 사항을 모두 지원할 수는 없고 어느 하나만을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제2항**에서는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각 호로 **지역자활센터의 설립·운영 비용** 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제1호), 국유·공유 재산의 무상임대(제2호),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제3호)**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이라는 문언을 사용하여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체계에 비추어 보면, **보장기관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지원 사항 모두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같은 항 제1호의 지원 사항의 경우에도 지원 사항 모두에 대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에 따르면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이나 상담, 직업교육 등을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자활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고(제1항),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같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지역자활센터의 보조금 등의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종합하여 보면 기초생활보장법령에서는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이 지역자활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역자활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역자활센터의 보조금 등 지원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수급자 등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자활센터를 둔 취지를 고려하면, **보장기관이 지역자활센터에 지원하는 사항인 같은 법 제16조제2항제1호의 지원 사항도 폭넓게 인정하여 지역자활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지원 필요성에 따라 **어느 하나를 선택하거나 모두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보장기관은 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지역자활센터의 설립·운영 비용"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모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이 조에서 “법인등”이라 한다)를 법인 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 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 수행능력·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4.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 지도
5.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의 설립·운영 지원
6.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② 보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자활센터의 설립·운영 비용 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국유·공유 재산의 무상임대
3.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③ ~ ⑤ (생 략)



이 자료는 의원님들의 자치입법 활동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입법정책담당관(입법지원팀)에서 국내외 입법정책 동향 자료를 요약·정리하여 제공해 드리는 것입니다.